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마포1번가연구단)

검 토 보 고 서

2022. 9. 23. 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【마포1번가연구단 소관】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1. 안건명

-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마포1번가연구단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5일(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회부일자

- 2022년 9월 13일(화)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마포1번가연구단)

I 예산규모

○ 마포구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감률
합 계	892,876,877	847,910,252	44,966,625	5.30%
일반회계	828,833,549	789,017,494	39,816,055	5.05%
특별회계	64,043,328	58,892,758	5,150,570	8.75%

II 일반회계

1. 마포1번가연구단 세입예산 : 변동 없음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415,973	415,973	0	0%
보 조 금	415,973	415,973	0	0%

2. 마포1번가연구단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마포1번가연구단	680,229	431,587	248,642	57.61%

3. 조직별(부서별) 세출예산 세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 부 사 업 명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	248,642	0	248,642	순증
마포1번가연구단	시·도 비 보조금 반환금 (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)	248,642	0	248,642	순증

III 검토의견

1.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

- 2022년도 제1회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1,597만 3,000원 대비 변동 없음.
- 2022년도 제1회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 8,022만 9,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,158만 7,000원 대비 57.61%에 해당하는 2억 4,864만 2,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2. 검토의견

○ 검토의견으로는

2022년도 제1회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·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1건 2억 4,864만 2,000원으로, 이는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임.

○ 지역사회혁신계획(협치사업) 실행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, 주관부서인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보조금 전액을 교부받은 후 각 사업부서(지역경제과, 생활보장과, 노인장애인과, 아동청년과, 여성가족과, 교통지도과)에서 간주처리하여 집행 및 정산함.

○ 본 추경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활동 축소와 시기 지연에 따라 각 부서의 사업 집행이후 남은 잔액을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총괄 수합하여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 등을 위한 세출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○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·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임.

○ 따라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으로서 목적적합성, 예측불가능성, 보충성, 시급성, 연내집행가능성, 한시성 등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편성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,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제1항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·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